

# 심 사 보 고 서

○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정 책 복 지 위 원 회

# 심사보고서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364호
----------	-------

2016. 5. 4.(수)  
정책복지 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6년 4월 18일
- 회부일자 : 2016년 4월 19일

다. 상정일자 : 2016년 4월 27일

-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서승우 기획관리실장)

가. 제안이유

- 충북개발공사 위·수탁 사업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이를 타 시도 개발공사 수준으로 조정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충북개발공사의 위·수탁 사업범위 조정(안 제6조)

- 종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
- 개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 위탁사업

### 3. 검토보고 요지

####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오범진)

- 충북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됨.
- 동법 제3조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의 기본원칙으로,
  - ①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함.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 민간 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충청도지사가 발의한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충북개발공사의 위·수탁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고 있어, 이를 타 시·도의 수준으로 조정하여 경영 효율성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임.

#### ※ 충북개발공사의 위·수탁 범위 조정(안 제6조)

종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

개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 위탁사업**

- 물론 상위법령에서 지방공기업의 위·수탁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3조의 기본원칙 수준에서 선언적 의미의 제한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동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또한, 조례안 개정 이유에 제시된 것처럼 타 시·도의 경우,
  - 인천시의 경우만 현행 충청도와 동일하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 위·수탁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 대구, 광주 등 6개 지역은 “공공단체” 를 위·수탁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 부산, 전남은 “공공기관” 을,
  - 충남, 전북, 경북은 “그 밖의 자의 사업” 으로 규정하여 위·수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여기서, 부산, 전남 지역 조례에 규정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공시하는 기관으로,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기관임.
- ※ '16년도 공공기관 현황 :  
총 323개 (공기업 30, 준정부기관 90, 기타공공기관 203)
- 그리고, 대구, 광주 등 6개 지역 조례에 규정된 “공공단체”는 명확한 법적 정의규정이 없고,
- 다만 통념적으로,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생활영역에서 국가로부터 독립해 포괄적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법상 단체, 공재단, 영조물법인으로 별도의 법령에 따라 구성된 단체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공공단체”는 개별 법령에 설립 근거가 규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즉, 타 지역 조례 사례에 비추어 보면, 현행 충청도의 위·수탁 범위가 다소 제한적임은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규정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경영원칙에 비추어 볼 때, 단지 공사의 경영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위·수탁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현 시점에 충북개발공사의 위·수탁 범위를 “공공기관”과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는 필요성에 대해 추가 설명이 요구됨.

< 참고자료 : 타 시도 개발공사 조례상 위탁사업 범위 >

조 례 명	대행사업 및 위탁사업 범위에 관한 규정	비고
부산도시공사 설치조례	제2조 제1항 1.~ 13.<생략> 1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u>공공기관이 위탁</u> 하거나 국가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하는 사업 15.<생략>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조 제1항 1. 17.<생략> 1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충북과 동일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1.~9.<생략> 10. 기타 공원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u>공공단체가 위탁</u> 하는 사업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제24조 1.~16. <생략>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u>공공단체가 위탁</u> 하는 사업 18.~19.<생략>	
대전도시공사 조례	제2조 1.~14.<생략> 1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u>공공단체가 위탁</u> 하는 사업 16.~17.<생략>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조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u>공공단체가 위탁</u> 하는 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하는 사업	
경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 1.~8.<생략>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10. <u>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u> 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19조 1.~5.<생략> 6.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u>공공단체가 위탁</u> 하는 사업	
충청남도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19조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u>그 밖에 자의 사업을 대행</u>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수탁 계약에 의한다.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20조 제1항 1.~8.<생략>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u>등이 위탁</u> 하는 사업 10.~15.<생략>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 제1항 1.~14. <생략> 1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u>공공기관이 필요</u>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관리 16.~17.<생략>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제21조①공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u>기타 위탁자 의 사업</u> 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경남개발공사 설치조례	제20조 제1항 1.~16.<생략> 1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u>공공단체가 위탁</u> 하는 사업 18.~25.<생략>	

< 참고자료 : 타지역 출자·출연기관 위수탁 현황 >

조 례 명	사업범위에 관한규정	위수탁 사례
경남개발공사 설치조례	제20조 제1항 1.~16.<생략> 17.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8.~25.<생략>	- 경남 마산의료원(경남출연기관) 신축사업 - 경남 발전연구원(경남출연기관) 신축사업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20조 제1항 1.~8.<생략>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10.~15.<생략>	- 자동차 부품산업 혁신센터 (전북출연기관) 건축 - 남원의료원(전북출연기관) 간호사 기숙사 및 장례식장 건축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 위탁사업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 10. (생략)</p> <p>11.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u></p> <p>12. · 13. (생략)</p> <p>② (생략)</p>	<p>제6조(사업) ①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u>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 위탁사업</u></p> <p>12. · 1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관계법령 발취

###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개정 2007.12.14., 2008.2.2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